

[별지 제1호의7서식] <개정 2020. 10. 20.>

- 안전관리인증작업장
- 안전관리인증업소
- 안전관리인증농장
-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

(HACCP) 인증변경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영업허가(신고·등록)번호		영업허가(신고수리·등록) 연월일	
	작업장(업소·농장)명		전화번호	
	소재지	본사		
		공장(농장)		
	대표자 성명			생년월일
	관리 책임자			생년월일
HACCP 적용업종 또는 가공품의 유형				

변경하려는 사항	변경 전	변경 후

변경사유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8항에 따라 ([] 안전관리인증작업장 [] 안전관리인증업소 [] 안전관리인증농장 []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)의 인증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정하는 수수료
------	-------------------	--

처리절차

